

---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0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승관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7. 마포구청장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09. 11. 26 ~ 12. 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9. 12. 3.
-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2

## 2.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		2011년도말 현재액	증감액
			수입	지출		
합 계		56,040,740 [32,808,387]	11,561,723 [9,379,269]	10,863,178 [10,005,724]	56,739,285 [32,181,932]	698,545 [△626,455]
① 통합관리기금	2006	23,232,353	2,182,454	857,454	24,557,353	1,325,000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812,106	2,882,290	3,501,120	193,276	△618,830
③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996	156,432	496,811	601,050	52,193	△104,239
④ 자활기금	2003	1,295,074	44,074	39,640	1,299,508	4,434
⑤ 노인복지기금	1997	501,693	117,950	18,420	601,223	99,530
⑥ 여성발전기금	2005	1,802,654	171,582	73,120	1,901,116	98,462
⑦ 장학기금	2008	8,045,788	339,112	337,780	8,047,120	1,332
⑧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419,636	103,457	143,920	379,173	△40,463
⑨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994	1,321,442	75,197	73,030	1,323,609	2,167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99	559,037	17,935	420	576,552	17,515
⑪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2006	15,331,689	2,205,042	2,692,752	14,843,979	△487,710
⑫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205,650	661,000	437,970	428,680	223,030
⑬ 도로굴착복구기금	1997	505,061	1,231,400	1,218,320	518,141	13,080
⑭ 재난관리기금	1999	1,033,770	542,349	355,840	1,220,279	186,509
⑮ 식품진흥기금	2001	818,355	491,070	512,342	797,083	△21,272

## 2. 기금 운용 규모

### 가.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 년도	2011년도	2010년도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4,370,109	55,413,402	△11,043,293	△19.93
① 통합관리기금	2006	25,414,807	26,843,024	△1,428,217	△5.32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3,694,396	4,059,020	△364,624	△8.98
③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996	653,243	671,572	△18,329	△2.73
④ 자활기금	2003	113,582	186,002	△72,420	△38.94
⑤ 노인복지기금	1997	119,643	30,763	88,880	288.92
⑥ 여성발전기금	2005	174,236	98,493	75,743	76.90
⑦ 장학기금	2008	384,900	5,175,238	△4,790,338	△92.56
⑧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523,093	557,636	△34,543	△6.19
⑨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994	186,639	187,718	△1,079	△0.57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99	576,972	656,751	△79,779	△12.15
⑪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2006	7,826,178	12,231,343	△4,405,165	△36.02
⑫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	866,650	596,100	270,550	45.39
⑬ 도로굴착복구기금	1997	1,736,461	2,197,040	△460,579	△20.96
⑭ 재난관리기금	1999	1,426,119	1,121,114	305,005	27.21
⑮ 식품진흥기금	2001	673,190	801,588	△128,398	△16.02

나.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① 통합관리기금	합 계	25,414,807	합 계	25,414,807
	예치금회수	23,232,353	예치금	24,557,353
	예수금	1,325,000	예수금원리금상환	857,454
	이자수입	857,454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합 계	3,694,396	합 계	3,694,396
	출연금	300,000	고유목적사업비	1,120
	융자금회수	2,567,290	융자금	3,500,000
	예치금회수	812,106	예치금	193,276
	이자수입	15,000		
③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합 계	653,243	합 계	653,243
	융자금회수	494,350	고유목적사업비	1,050
	예치금회수	156,432	융자금	600,000
	이자수입	2,461	예치금	52,193
④ 자활기금	합 계	113,582	합 계	113,582
	예치금회수	69,508	고유목적사업비	39,640
	이자수입	44,074	예치금	73,942
⑤ 노인복지기금	합 계	119,643	합 계	119,643
	출연금	100,000	고유목적사업비	18,420
	예치금회수	1,693	예탁금	100,000
	이자수입	17,950	예치금	1,223
⑥ 여성발전기금	합 계	174,236	합 계	174,236
	출연금	100,000	고유목적사업비	73,120
	예치금회수	2,654	예탁금	100,000
	이자수입	71,582	예치금	1,116
⑦ 장학기금	합 계	384,900	합 계	384,900
	예치금회수	45,788	고유목적사업비	337,780
	이자수입	339,112	예치금	47,120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⑧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합계	523,093	합계	523,093
	융자금회수	89,327	고유목적사업비	280
	예치금회수	419,636	융자금	143,640
	이자수입	14,130	예탁금	225,000
			예치금	154,173
⑨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합계	186,639	합계	186,639
	예치금회수	111,442	고유목적사업비	73,030
	이자수입	46,397	예치금	113,609
	기타수입	28,800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합계	576,972	합계	576,972
	예치금회수	559,037	고유목적사업비	420
	이자수입	17,935	예치금	576,552
⑪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합계	7,826,178	합계	7,826,178
	출연금	600,000	고유목적사업비	2,692,752
	예치금회수	5,621,136	예치금	5,133,426
	이자수입	523,741		
	기타수입	1,081,301		
⑫ 옥외광고정비기금	합계	866,650	합계	866,650
	출연금	360,000	고유목적사업비	437,970
	예치금회수	205,650	예치금	428,680
	이자수입	6,000		
	기타수입	295,000		
⑬ 도로굴착복구기금	합계	1,736,461	합계	1,736,461
	예치금회수	505,061	고유목적사업비	1,218,320
	이자수입	15,400	예치금	518,141
	기타수입	1,216,000		
⑭ 재난관리기금	합계	1,426,119	합계	1,426,119
	출연금	509,535	고유목적사업비	345,840
	예치금회수	883,770	융자금	10,000
	이자수입	32,814	예탁금	750,000
⑮ 식품진흥기금	합계	673,190	합계	673,190
	융자금회수	409,114	고유목적사업비	162,342
	예치금회수	182,120	융자금	350,000
	이자수입	31,956	예탁금	150,000
	기타수입	50,000	예치금	10,848

### 3. 검토결과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5개 기금에 443억 7,010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기금 대비 19.93% 감소(110억 4,329만 3천원)한 규모임

◇ 수입계획은 출연금 19억 6,953만 5천원, 융자금회수금 35억 6,008만 1천원, 예치금회수금 328억 838만 6천원, 예수금 13억 2,500만원, 이자수입 20억 3,600만 6천원, 기타수입 26억 7,110만 1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4억 208만 4천원, 융자금 46억 364만원, 예탁금 13억 2,500만원, 예치금 321억 8,193만 1천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8억 5,745만 4천원 등으로 운용될 예정임

◇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계상된 254억 1,480만 7천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14개 기금의 운용 순계액은 189억 5,530만 2천원임

◇ 기금별 주요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에 35억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민간융자금에 6억원,
-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경영개선 및 홍보전문가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에 3,964만원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천 800만원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강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공모 민간위탁금 등으로 7천만원
- 장학기금은 장학금으로 3억 3,500만원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학자금융자에 1억 4,364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에 7,303만원,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예치금으로 5억 7,655만 2천원
-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 쓰레기 배출 홍보요원 운영 인건비 1억 2,354만 6천원

- 마포 청소년 문화의집 보조금 10억원,
-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2억 5,345만 6천원
- 음식물폐수 자원화사업 분담금 3억 1,287만원
-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 옥외대형광고물 시설물점검 192만원,
  - 안전도 검사수수료 4,000만원,
  - 토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3억 6,000만원,
  - 불법광고물 철거지원 용역 등 민간위탁금 3,5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복구공사비 12억 1,600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 역지변 설치에 1억 5,000만원,
  -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로 1억 3,500만원,
  - 수중펌프 구매비 4,8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000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2,203만 2천원,
  -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사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억 2,256만원,
  - 서울 국제음식박람회 참가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1,375만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민간융자금 등에 3억 5천만원 등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금운용시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이 요구됨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 ① 기금의 자원 조달 목적과 집행 사업간의 적합성 여부,
- ② 기금지출대상 사업이 아닌 부문에 대하여 기금을 지출한 목적외 지출 여부,

- ③ 기금 재원이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별되고 동시에 일반회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만 기금을 조성·운용함이 타당함에도 민간경상보조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과 같은 단순한 경상적 지출 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지출할 대상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 ④ 재원조성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
- 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금 용자사업들이 불합리한 용자조건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 ⑥ 예금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